

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(우산 및 양산)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

국가기술표준원(2024. 4. 29.)

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(우산 및 양산)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.

1. 개정 취지

-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-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'원단의 이음' 항목을 삭제

* 세부내용

-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 → 고시·공고)에서 확인 가능

❖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0(우산 및 양산) 신구조문대비표(일부 발췌)

현행	개정
5.5 원단의 이음 원단의 이음 부분은 KS G 3711의 5.5 봉제 상태에 따른다	<삭제>

